

1. 개정이유

해양수산부장관의 해양생태축 설정절차를 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생태축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및 고시에 필요한 사항과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국제적 보호가치와 학술적 연구가치가 높은 범고래, 흑범고래, 올리브바다거북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추가 지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안 제6조의2)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관리가 필요하거나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 관찰을 위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을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규정

나.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변경 등에 관한 사항(안 제27조의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시 관리방향, 시간적·공간적 범위, 열람할 수 있는 장소와 방법 등을 관보와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규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장에 제6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을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
2.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할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한 때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축의 명칭
2. 해양생태축의 위치 또는 범위
3. 해양생태축 설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4. 해양생태축의 설정 연월일
5. 해양생태축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제27조의2(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행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명칭
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3.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관리방향 등 주요내용
4.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열람장소 및 열람방법

별표 3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번호	국명(보통명)	학명	비고
1	귀신고래	<i>Eschrichtius robustus</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관심필요종

2	남방큰돌고래	<i>Tursiops aduncus</i>	CITES II IWC 포획금지종 IUCN 자료부족종
3	대왕고래	<i>Balaenoptera musculus</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멸종위기종
4	보리고래	<i>Balaenoptera borealis</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멸종위기종
5	북방긴수염고래	<i>Eubalaena japonica</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멸종위기종
6	브라이트고래	<i>Balaenoptera edeni</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자료부족종
7	상괘이	<i>Neophocaena asiaeorientalis</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취약종
8	참고래	<i>Balaenoptera physalus</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멸종위기종
9	향고래	<i>Physeter macrocephalus</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취약종
10	흑등고래	<i>Megaptera novaeangliae</i>	CITES I IWC 포획금지종 IUCN 관심필요종
11	범고래	<i>Orcinus orca</i>	CITES II 포획금지종

			IUCN 정보부족종 CITES II
12	흑범고래	<i>Pseudorca crassidens</i>	포획금지종 IUCN 준위협종
13	고리무늬물범	<i>Pusa hispida</i>	IUCN 관심필요종
14	띠무늬물범	<i>Histiophoca fasciata</i>	IUCN 관심필요종
15	점박이물범	<i>Phoca largha</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천연기념물 제331호 IUCN 관심필요종
16	물개	<i>Callorhinus ursinu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IUCN 취약종
17	바다사자	<i>Zalophus japonicus</i>	IUCN 절멸종
18	큰바다사자	<i>Eumetopias jubatus</i>	멸종위기 야생생물 II급 IUCN 위기근접종

별표 3 제4호 표에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올리브바다거북	<i>Lepidochelys olivacea</i>	CITES I IUCN 취약종
---	---------	------------------------------	---------------------

부 칙

이 규칙은 2021년 6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제6조의2(해양생태축의 설정 기준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해역을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으로 설정할 수 있다.		
		1. 해양생물의 서식과 이동을 위해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		
		2. 기후변화에 따른 해양생태계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필요한 지역 또는 해역		
		② 해양수산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할 경우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가해양생태계종합조사 결과를 토대로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해양생태축을 설정한 때에는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해양생태축의 명칭		

<신 설>

2. 해양생태축의 위치 또는 범위
 3. 해양생태축 설정의 목적 및 근거법령
 4. 해양생태축의 설정 연월일
 5. 해양생태축의 지형도(해도를 포함한다)
- 제27조의2(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8조제1항에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을 수립하면 이를 시행하기 전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 해양보호구역 및 그 인접지역 주민과 이해관계인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②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변경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및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명칭
 2.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시간적·공간적 범위

	<u>3.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수립 목적 및 관리방향 등 주요 내용</u> <u>4. 해양보호구역관리계획의 열람장소 및 열람방법</u>
--	---